

대통령령 제 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검토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8항 전단”을 “제5조2의 제8항 전단”으로,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없는 외국인”을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없는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 “하고,”를 “하고, 제5조2의”로 한다.

-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가안보위해 외국인투자 심의·결정 등) ①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 해당 외국인

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확인 요청을 받으면 30일 내에 확인 결과를 외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을 위해 외국인에게 자료보완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완·검토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주무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목에 모두 해당함을 알게 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검토 요청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다만, 외국인이 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외국인투자가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통지한 경우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주식 등의 취득을 허

용하는 통지를 한 경우(다만, 통지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외국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는 경우
2. 주무부장관 또는 정부수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한 경우
3.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동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함을 통지한 경우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수사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라 보고 및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결정 등을 거친 경우에는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심의·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외국인의 주식 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용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2. 결정 사유

3. 조건의 내용(제8항 후단에 따라 조건이 붙은 경우만을 말한다)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함에도 외국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외국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⑫ 기타 외국인투자 심의 절차 및 기준,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 법 제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하 “국가안보위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u>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검토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u>	2. ----- ----- ----- ----- ----- -----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나. ----- -----

1) ~ 5)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⑤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
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 요청
을 할 수 없다.

⑥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갖
추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1
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검토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
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의 확인 요청은
제1항제2호, 제5항 및 제8항
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신고
로 본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보위
해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경
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무
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
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
나 자료를 외국인투자위원회
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항제2호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검
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
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
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 외

<삭 제>

<삭 제>

국인투자에 대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외국인투자위원
회의 심의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
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
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8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의 주
식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
용하는 통보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밀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1.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2. 결정 사유
3. 조건의 내용(제8항 후단에
따라 조건이 붙은 경우만을
말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
8항 전단에 따라 국가안보위
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 외국인투자로 이
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결정이 있는 날

<삭 제>

⑤ ----- 제5
조2의 제8항 전단-----

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국가안보위해의 우
려가 없는 외국인(이하 “대한
민국국민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해야 하고, 제8항 후단에
따라 조건부 투자 허용 결
정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해당 조건의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해당 주식등을 대한민국국
민등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생략)

<신설>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없는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인-----

----- 하고, 제5조2의 -----

⑥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5조의2(국가안보위해 외국인
투자 심의·결정 등) ① 외국
인은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을 갖추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확인 요청을 받으면 30일 내에 확인 결과를 외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을 위해 외국인에게 자료보완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완·검토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주무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목에 모두 해당함을 알게 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검토 요청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
년이 경과한 경우(다만, 외
국인이 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외국인투자가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통지한
경우 또는 제8항에 따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주식 등의 취득을
허용하는 통지를 한 경우
(다만, 통지 이후 외국인투
자 신고 내용의 중대한 변
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
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외국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둔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투
자 신고가 있는 경우

2. 주무부장관 또는 정부수사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한 경우

3.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확
인요청을 한 후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동 외국인투자
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에 모두 해당함을 통지한
경우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
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
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수사기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및 기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라 보고 및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

문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결정 등을 거친 경우에는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심의·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외국인의 주식 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u>제5조의2</u> (생략)	<u>허용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u> <u>1.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u> <u>2. 결정 사유</u> <u>3. 조건의 내용(제8항 후단에 따라 조건이 붙은 경우만을 말한다)</u> <u>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함에도 외국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외국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u> <u>⑫ 기타 외국인투자 심의 절차 및 기준,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u> <u>제5조의3</u> (현행 제5조의2와 같음)
--------------------------	--